

Q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전조끼(야광띠)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조끼는 안전보호구가 아니므로 착용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진위여부와 자체적인 안전을 위해 직원의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옷에 부착시킬 경우 적용 크기나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착용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안전조끼(야광띠)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적용되는 1호부터 7호까지의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안전조끼를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착용시킬 수 있는지는 작업의 위험요인에 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조끼의 크기나 기준은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시공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산재에 관해서는 전문업체에서 처리한다고 구두로 약정하고, 전문업체에서는 실제 산재당사자에 대해(3주가량 입원치료) 일당의 70%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산재사실을 시공사인 원청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은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시공사인 원청회사에서는 전문업체와 도급의 조건으로 산재 은폐 및 보상처리까지 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전문업체에서는 이후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원청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자에 그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 작업투입전 안전조회시 스트레칭 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에어로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에어로빅 강사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0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 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 및 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있다면 동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근로자 작업투입전 안전조회시 에어로빅 강사를 채용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전보건행사(무재해선포식, 무재해경연, 무재해달성 경축 등)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행사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포상품, 회식비 등) 또한, 현장이 협소하여 마땅한 장소가 없을시 현장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사(안전기원제 제외)를 할 경우에도 안전보건행사로 인정되는지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한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산업안전보건기간 행사 등을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또는 근로자 등에 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부지의 협소등으로 부득이 현장 내에서 실시가 곤란할 경우 동 행사를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인근 장소에서 행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